



장애인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Part C 절차적 보호 규약 (부모의 권리)

DEL 11-001a KO (Rev. 7/12)

서문

장애인 교육법(IDEA)에는 연방법으로 장애를 가진 영유아(0-36개월)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IDEA의 Part C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연방 규정(34 CFR Part 303)과 워싱턴 주 정책 및 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Part C 제도는 영유아 조기지원(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ESIT)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참여를 최대화하고 조기 개입 절차의 초기 의뢰에서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SIT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 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4 CFR 303.430-438의 분쟁해결 선택권을 포함하여 34 CFR 303.400-438의 연방 규정에 정의된 절차적 보호 규약에 대한 내용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리에 대한 본 문서는 연방 Part C 규정에 정의된 자녀와 가족과 관련된 절차적 보호 규약에 대한 공식 통지서입니다.

자녀 및 가족과 관련된 절차적 보호 규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가족자원조정관(FRC)과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자원조정관(Family Resources Coordinators, FRC)은 Part C의 절차적 보호 규약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귀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전문가와의 협력 방법을 제안합니다.

‘적합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IFSP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IFSP에는 IFSP 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녀와 가족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특정 조기 개입 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방 Part C 규정 (<http://www.gpo.gov/fdsys/pkg/FR-2011-09-28/pdf/2011-22783.pdf>)은 조기 개입 서비스를 “Part C에 따라 적격한 각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사항과 자녀의 발달 향상과 관련해 가족에게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보호 규약의 개요 (부모의 권리)

워싱턴 주 영유아 조기지원 프로그램에서 귀하는 부모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의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초 IFSP 회의에서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수립 후 다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무료로 평가, IFSP 수립, 서비스 조정 및 절차적 보호 규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요청 및 동의한 경우, 심사 과정 동안 언제든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해당하는 경우)
- Part C 대상인 경우, IFSP에 언급된 자녀 및 가족이 **적합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심사, 평가 및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자녀의 특성을 식별, 평가 또는 배치의 변경 제안이나 자녀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의사 결정이 필요한 모든 회의에 초대 및 참석할 수 있는 권리

- 자녀의 특성을 식별, 평가 또는 배치나 자녀 또는 가족에 대한 적합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의 변경이 제안되거나 거부되기 전 적시에 서면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경우, 자연 스런 환경에서 각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개인 신상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무료로 자녀의 조기 개입 기록 사본 1부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 각 IFSP 회의 후 가능한 조속히 평가 및 IFSP 사본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 필요한 경우, 자녀의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수 있는 권리
- 부모/제공자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및/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행정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상기 권리 이외에, Part C의 절차적 보호 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자녀의 성명, 귀하의 성명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성명; 2) 자녀 또는 가족의 주소 3) 자녀 또는 귀하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 4) 자녀의 생년월일, 출생지와 어머니의 결혼 전 성과 같은 기타 간접적 식별 정보 5) 개인 특성 또는 합리적 확신을 가지고 자녀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해줄 기타 정보 목록, 또는 6)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귀하의 자녀 신원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는 정보

사전 서면 통지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귀 자녀의 특성을 식별, 평가 또는 배치나 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적합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개시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거부하기에 앞서 합리적 기한 내에 사전 서면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제안하거나 거부한 행위
- 그러한 행위를 취한 사유
- Part C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절차적 보호 규약
- 이 같은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과 기한을 비롯한 주 정부 중재, 주 정부 이의 신청과 적법 절차 심리 절차

확실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되며 귀하의 모국어로 제공됩니다.

귀하의 모국어 또는 기타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서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통지서를 구두 또는 귀하의 모국어나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통역해줘야 합니다.
- 귀하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에 명시된 요건들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

동의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동의를 필요한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국어로 충분히 제공받았습니다.
- 동의를 필요한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며, 동의는 해당 활동을 기술하고 공개 될 조기 개입 기록(해당하는 경우)과 이러한 기록의 공개 대상을 명시합니다.
- 동의는 자발적인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동의를 철회할 경우, 이는 소급되지 않습니다(철회 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에 앞서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녀의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발달

모국어(제한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는 귀하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 시행 시, 모국어는 귀하의 자녀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청각 장애 또는 난청,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사용하는 문어가 없는 사람의 경우, 모국어는 해당 당사자가 보통 사용하는 의사 소통 방법을 의미합니다(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 소통 등).

- 검사 시행
- 자녀에 대한 모든 평가 시행
- 자녀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지급을 위하여 공공 혜택, 공영 보험 또는 개인 보험 이용
- 귀하와 귀 자녀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의 공유

또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앞서 귀하의 서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귀하를 강제(강요)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가족자원조정관(FRC)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의 동의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적법 절차 심리 절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자원조정관(FRC),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적합한 유자격 직원은 다음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귀하가 가능한 검사, 평가 또는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귀하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검사, 평가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Part C 대상 자녀의 부모로서, 귀하는 귀하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수락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ESIT 프로그램의 다른 조기 개입 서비스를 손상시키지 않고, 우선 서비스를 수락한 후에 해당 서비스(가족자원조정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 기능 제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밀 기밀 유지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기밀 유지 절차에 따라, 귀하는 검사, 평가, 적격성 결정, IFSP 수립 및 이행,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귀하의 자녀와 관련한 개별 이의 신청과 관련된 기록 및 기타 Part C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자녀와

가족에 대한 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검사 및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이 더 이상 해당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까지 귀하의 자녀가 조기 개입 서비스를 소개 받을 당시 Part C에 따라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귀하의 자녀나 가족에 관한 기록을 검사 및 검토(근무 시간 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IFSP 관련 회의 또는 ID, 평가, 배치 또는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심리 전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기록의 검사 및 검토 기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록의 설명 및 해석을 합리적으로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해당 정보의 사본을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귀하의 대리인이 기록 검사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양육권, 위탁보호, 후견인, 별거 및 이혼과 같은 문제로 관련 주 법에 따라 귀하에게 권한이 없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귀하가 귀 자녀에 관한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당사자의 성명, 열람 허가일과 자녀 기록 사용 권한을 가진 당사자의 사용 목적을 포함하여 Part C에 따라 수집, 획득 및 사용되는 기록의 열람 권한을 가진 당사자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기록에 한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귀하는 자녀 또는 본인에 대한 정보만 검사 및 검토하거나 특정 정보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각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조기 개입 기록의 유형 및 장소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Part C에 따라 제공한 기록의 사본 비용이 해당 기록의 검사 및 검토를 이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사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공자는 Part C에 따른 정보를 조사 또는 검색하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각 IFSP 회의 후 가능한 조속히 자녀 및 가족에 대한 평가서 및 IFSP 사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art C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되는 초기 개입 기록 상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이거나 귀하 또는 귀 자녀의 사생활 또는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제공자는 요청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합리적 기한 내에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정보 수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귀하에게 거부 사실과 심리 요청 권리가 통지됩니다.

다음 정의가 이 섹션에서 사용됩니다. (1) **“파기”**는 개인 정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정보에서 개인 정보를 물리적으로 파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초기 개입 기록”, “교육 기록(들)”** 또는 **“기록(들)”**은 Part C에서 수집, 보관 또는 사용이 요구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3) **“참여 기관”**은 Part C의 요건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참여 기관에는 Part C 서비스(서비스 조정, 평가 및 기타 Part C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주 정부 주도 기관, 각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초기 개입 서비스에 일차 의뢰원 또는 자금을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청 시,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초기 개입 기록 상의 정보는 정확하고, 허위가 아니며, 귀하와 귀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심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Part C 절차에 따라 적법 절차 심리 또는 34 CFR 99.22의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규정에 부합하는 심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 결과로,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이거나 귀하와 귀 자녀의 사생활 또는 다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계약자 또는 제공자는 그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심리 결과로,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해당 정보는 정확하고 허위가 아니며, 귀하와 귀 자녀의 사생활 또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귀 자녀의 기록에 관해 계약자 또는 제공자의 결정에 귀하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다는 진술서를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 있음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기록 또는 문제가 된 부분(기록에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보관하는 한 이러한 절차에 따라 귀 자녀의 기록 상에 기재된 설명을 귀 자녀의 기록의 일부로서 보관해야 합니다.
- 해당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제3자에게 귀 자녀의 기록 또는 문제가 된 부분을 공개할 경우, 귀하의 설명도 함께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 전 동의

개인 신상 정보와 관련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Part C(34 CFR 303.414) 및 FERPA(34 CFR 99.31)에 따라 권한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Part C에 따른 정보 수집, 보관 또는 사용 시 계약 담당자 또는 제공 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Part C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제공자는 FERPA에 따라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귀하의 동의 없이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기관에 귀 자녀의 초기 개입 기록에 기재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절차들이 귀하의 거부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 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귀 자녀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등 동의 거부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합니다.

Part C에 따라, ESIT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 교육 기관(공립학교 교육감)과 지방 교육 기관(지방 교육구)에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과 귀하의 연락처(귀하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IDEA의 Part B의 서비스 대상인 모든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록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보호 규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각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

보관, 저장,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신상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각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측 담당자 1명이 개인 신상 정보의 기밀성 보장을 담당합니다.
-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는 IDEA와 FERPA에 부합하는 워싱턴 주 Part C 정책과 절차에 관한 교육 및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각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 검사를 위하여 기관 내 현재 개인 신상 정보 열람 권한을 가진 직원의 성명과 직책이 기재된 명단을 보관해야 합니다.
-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는 Part C, 20 USC 1232f의 GEPA 규정 및 EDGAR, 34 CFR Part 76 및 Part 80에 따라 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이상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를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자녀 또는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이상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부모의 요청 시 해당 정보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부모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서비스 조정관(들)(FRC) 성명, 초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들) 및 기존 정보(해지 년도와 당시 연령 및 해지 시 가입한 다른 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영구 기록은 기간 제한 없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귀 자녀의 초기 개입 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조속히 FRC 또는 IFSP 팀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ESIT 프로그램은 최저 수준의 분쟁 해결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 자녀의 특성 식별, 평가, 배치 또는 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초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초기 개입 서비스와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귀하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3 가지 공식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중재,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및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중재

중재는 비적대적인 방법으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발적인 것으로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주 정부 주도 기관은 중재 과정을 선택하지 않는 부모와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분쟁 해결 기관이 고용한 제 3 자(공정한 조정관) 또는 주 내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또는 커뮤니티 학부모 자원 센터를 만나 중재 절차 이용의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의 이용을 권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주도 기관은 중재 요청서를 수령 후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를 완료해야 하며 중재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지연하기 위해 또는 Part C 상의 다른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유효한 중재 기술을 교육받은 적격하고 공정한 중재인은 양 당사자들을 만나 그들이 편안하고 적대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분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 정부 주도 기관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적격하고 공정한 중재인 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재인은 임의로 또는 기타 공정한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주 정부 주도 기관은 중재를 장려하기 위해 회의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비용을 부담합니다.

중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명시하고 중재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논의사항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추후 있을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와 주 정부 주도 기관에 대한 구속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된 서면 중재 합의서는 주 관할 법원 또는 미 지방 법원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중재는 귀하가 언제든지 공정한 적법 절차를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시에 중재와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는 공정한 심리 담당관이 수행하는 공식 절차로 자녀를 대신하여 개별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는 요청서를 xc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다시 30 일 이내에 중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적법 절차 심리 이행을 위해 임명됩니다.

심리 담당관은 Part C 의 규정과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의 필요 사항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 후 적절한 해결 방법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재인 및 심리 담당관 관련 . . . 중재인과 적법 절차 심리 담당관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함은 중재인 또는 심리 담당관으로 임명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 주 정부 기관의 또는 해당 아동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기타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2)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에 상충하는 개인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중재인 또는 심리 담당관으로 임명된 자는 주 정부 주도 기관,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단지 중재 또는 적법 절차 심리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서 고용한 고용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주 정부의 비용으로 서면 결정서를 포함한 절차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Part C 에 따라 귀하는 이러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변호인(본인의 비용으로)과 Part C 대상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관련 특수 지식 또는 교육을 받은 개인(본인의 비용으로)에게 자문을 구하고 동석할 수 있는 권리
-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과 대면 및 반대신문을 하고 출석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
- 절차 최소 5일 전에 귀하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에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무료로 심리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 축어(글자 그대로) 전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무료로 사실 및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절차에서 언급된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는 귀하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 정부 주도 기관이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서면 결정서가 전달됩니다. 심리 담당관은 각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30 일 이후에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의 보고서 및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당사자는 주 정부 또는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와 귀하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 이의 신청과 관련된 소송의 계속 기간 동안, 귀 자녀와 가족들은 귀하가 동의한 IFSP 상에 명시된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 신청이 Part C 의 최초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경우, 귀 자녀와 가족들은 논쟁 사항이 아닌 다른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위에서 언급한 조정과 적법 절차 심리 이의 신청 이외에, 다른 주의 개인 또는 기관을 포함한 개인 또는 기관은 Part C 프로그램 요건을 위반한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하여 공공 기관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주도 기관은 부모와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을 포함한 이해 관계 당사자에게 주 정부의 이의 신청 절차를 널리 보급합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 정부 주도 기관, 공공 기관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Part C 의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진술
- 그러한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서명과 연락처
- 특정 자녀와 관련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해당 자녀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
 - 해당 자녀의 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의 성명
 -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자녀의 문제에 대한 설명
 - 이의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알고 있고 이용 가능한 제안된 문제 해결 방법

위반이 주장된 날로부터 일(1)년 이내에 주 정부 주도 기관에 행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기관은 주 정부 주도 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 신청서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주 정부 주도 기관은 이의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주 정부 주도 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독립적인 현장 검사 수행
-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 상의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관/제공자에게 주 정부 주도 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의 신청 사항 해결 방법 제안과 중재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을 위한 기회를 포함하여 이의 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Part C 요건의 위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
- 주 정부 주도 기관의 최종 결정 결정 사유를 비롯하여 이의 신청서 상의 각 혐의의 처리와 사실 및 결론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서면 결정서를 이의 신청서 제출인에게 발행

과거/현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최종 결정이 날 경우, 주 정부 주도 기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서의 대상인 귀 자녀와 가족의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 시정 조치를 비롯하여 적합한 서비스(보상 서비스 또는 금전적 배상 등), 및
- 장애가 있는 모든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향후 적합한 서비스 제공

주 정부 주도 기관은 필요한 경우, 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 지원 활동, 협의 및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의 대상이거나 해당 심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이 사안인 서면 이의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주 정부 주도 기관은 심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적법 절차 심리에서 언급되는 이의 신청서 상의 내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조치의 일부가 아닌 이의 신청서 상의 사안은 60 일 내에 본 문서에 명시된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본 절차에서 동일한 당사자들이 관련된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진 이의 신청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주 정부 주도 기관은 심리 결정에 구속되는 이의 신청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 정부 주도 기관은 공공 기관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조기 개입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가 적법 절차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이의 신청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Part C 대상 아동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아동이 주 법률에 따라 워싱턴 주의 피보호자인 경우

절차에 따라 부모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개인.

이러한 절차에는 아동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하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아동에게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리 부모를 지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는 하기 방법이 포함됩니다.

대리 부모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부모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선정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신이 대리하는 아동의 권리에 상충하는 개인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해당 아동을 적절히 대리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정부 기관의 고용인 또는 해당 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가족 구성원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교육, 치료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 절차에 따라 대리 부모로서 자격을 얻은 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단지 대리 부모 수행을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고용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동이 워싱턴 주의 피보호자이거나 위탁 보호 시설에 있는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기관은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공공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워싱턴 주의 피보호자인 아동의 경우, 해당 선임 기준에 충족할 경우,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기관 대신에 아동의 케이스를 감독하는 판사가 대리 부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부모는 Part C 의 모든 목적 상 부모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연락처

귀하의 절차적 보호 규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 가족자원조정관(FRC)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면, 중재 및/또는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십시오. 영유아 조기 지원(ESIT) 프로그램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
Department of Early Learning
PO Box 40970
Olympia, Washington 98504-0970
전화: (360) 725-3500
팩스: (360) 725-4925
www.del.wa.gov/esit

학부모 옹호 자원

Washington PAVE (Partnerships for Action, Voices for Empowerment)
6316 S. 12th St.
Tacoma, Washington 98465
전화: 1-(800) 5-PARENT
팩스: 1-(253) 566-8052
www.wapave.org